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창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12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한창민·윤종오·용혜인

황운하 • 서미화 • 김준형

전종덕 • 백승아 • 김종민

신장식 · 차규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, 2025. 3. 14. 고용노동부장관이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행지침을 신설하여, 6개월 단위로 최대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.

현행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도, 「근로기준법」 제53조제4항은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 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위 규정은 주 52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한도 시간으로 설정해놓고도 주 5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, 특별 한 사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두고 있지 않음. 이로 인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의 항목을 변경하는 일이 가능하고,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한 「헌법」 제32조제3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.

특별연장근로의 실태를 살펴보면,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 외에,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2024년 기준 67.6% 이상을 차 지하여, 특별한 사정에만 한정하여 연장 근로하도록 도입된 본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,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되고 상시화 되어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,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현재 「근로기준법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되,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함으로써 특별연장근로가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4항 본문 중 "특별한 사정이 있으면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- 2.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~	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① ~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	④ <u>다음 각 호의 어</u>		
<u>으면</u>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	<u>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-		
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			
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			
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			
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			
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			
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		
	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		
	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		
	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		
	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		
<u>&lt;신 설&gt;</u>	2.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		
	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		
	조치가 필요한 경우		
⑤ ~ ⑦ (생 략)	⑤ ~ ⑦ (현행과 같음)		